

2024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2023.10.31.)

※ 보건복지부 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인력배치 기준 개정 관련근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노인요양 시설 1일당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5명당 1명 이상인 시설

(단위 : 원)

등급	2023년 수가	2023년 본인부담금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금
1등급	78,250	15,650	80,630	16,130
2등급	72,600	14,520	74,810	14,960
3,4,5등급	66,950	13,390	68,990	13,780

2) 2024년 1월1일 기준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단위 : 원)

등급	2023년 수가	2023년 본인부담금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금
1등급	81,750	16,350	84,240	16,850
2등급	75,840	15,170	78,150	15,630
3,4,5등급	71,620	14,320	73,800	14,760

3) 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계약사항

(단위 : 원)

급여비용 안내 (*30.5일 기준*) - 비급여 계산입력									
분류	인력배치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항목 식사재료비 (간식비포함)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 포함)		
		총급여액	본인부담금				일반 (20%)	감경 (12%)	감경 (8%)
			일반 20%	감경 12%	감경 8%				
1등급	2.5:1	2,459,215	491,840	295,100	196,730				
	2.3:1	2,569,320	513,860	308,310	205,540				
2등급	2.5:1	2,281,400	456,280	273,760	182,510				
	2.3:1	2,383,580	476,710	286,020	190,680				
3,4,5 등급	2.5:1	2,104,195	420,830	252,500	168,330				
	2.3:1	2,250,900	450,180	270,100	180,070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상향(0.9182%)**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수가 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리며, **2024년 01월 분부터 본인부담금 급여 수가가 변동되어 적용됩니다.**

2023년 12월 일

요양원장 (관인생략)